

2021년도 제7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

서울특별시에서는 문화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 및 단체들에게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과 성원을 바랍니다.

2021. 6. 8.

서울특별시

1. 시상분야 : 14개

가. 학 술 분 야	아. 대 중 예 술 분 야
나. 문 학 분 야	자. 문 화 산 업 분 야
다. 미 술 분 야	차. 문 화 재 분 야
라. 국 악 분 야	카. 관 광 분 야
마. 서 양 음 악 분 야	타. 체 육 분 야
바. 무 용 분 야	파. 독 서 문 화 분 야
사. 연 극 분 야	하. 문 화 예 술 후 원 분 야

※ [참고1] 분야별 세부분야

2. 시상인원 : 분야별 각 1명씩 총 14명(또는 단체) 이내

3. 시상내용 : 상패

4. 수상후보 추천권자 : 해당분야별 관계기관·단체 또는 개인

- 관계기관 및 단체 : 해당 기관·단체 대표 명의 추천
- 일반시민(개인) : 만 19세 이상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거나,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10명 이상일 경우 후보자로 등록

※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10명 미만일 경우 후보자로 미인정

※ 추천받은 후보에게 신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낙한 경우만 심사 진행

5. 수상자격

- 해당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**사업장(주된 직장)**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

추천제외대상 ※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,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

- ▶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▶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
- ▶ 최근 2년 이내(추천일 기준)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▶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
- ▶ 수사 중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(참고2 참조)
- ▶ 산업안전보건법, 공정거래관련법, 근로기준법,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
- ▶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
- ▶ 현직공무원(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), 시·구의원은 제외

6. 제출서류

- 가. 추천서(붙임1) 1부
- 나.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
(자료에 따라 사진·모형·투지도·청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음)

7. 제출방법

- 온라인 : 이메일 또는 문화포털 신청링크 작성
 - ▶ 이메일 : munhwasang@seoul.go.kr
 - ▶ 문화포털(<https://culture.seoul.go.kr>) ⇒ 신청 배너 클릭
- 오프라인 :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
 - ▶ 제출처: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정책과(04515)

8. 제출기간 : 2021. 6. 8.(화) ~ 7.12.(월)

※ 모든 접수(방문, 우편, 온라인접수)는 '21.7.12일자 18:00까지 도착 분까지 유효

9. 시상 : 2021. 10월말(예정)

10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나.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 서울소식 ⇒ 공고 ⇒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다.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,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라.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시,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시상은 2021년 10월말에 예정이며, 시상식은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.
- 바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(국번없이 120번),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(☎ 02-2133-25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 서울특별시 문화상 세부 시상분야

□ 시상분야 : 14개 분야

가. 학 술 분 야

- 정치, 경제, 사회, 역사, 윤리학, 철학, 언어학 등 인문사회분야
- 기초과학, 지구환경과학,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분야

나. 문 학 분 야

- 시, 소설, 희곡, 시나리오, 수필, 평론과 그에 관한 번역 등 문학분야

다. 미 술 분 야

- 회화, 판화, 사진, 서예, 공예, 조각 등 미술분야

라. 국 악 분 야

- 연주, 창작, 평론 등 국악분야

마. 서 양 음 악 분 야

- 연주, 창작, 평론 등 서양음악분야

바. 무 용 분 야

-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무용분야

사. 연 극 분 야

- 연극, 뮤지컬 등

아. 대 중 예 술 분 야

- 영상(영화, 뉴미디어 등), 대중음악, 연예 등 대중예술분야

자. 문 화 산 업 분 야

- 언론(신문, 잡지, 방송), 게임, 애니메이션,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분야

차. 문 화 재 분 야

- 문화재 발굴, 보존, 연구, 전통문화, 공예 등 문화재분야

카. 관 광 분 야

- 관광업, 호텔업, 관광요식업 등 관광분야

타. 체 육 분 야

- 전문체육, 생활체육, 학교체육 등 체육분야

파. 독 서 문 화 분 야

- 독서문화 진흥(출판, 서점, 도서관, 독서단체, 시민 등) 및 기타 공헌(연구, 기반 조성, 독서활성화 공헌 등) 분야

하. 문 화 예 술 후 원 분 야

- 문화예술인 외에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 개인 또는 기업

서울특별시 문화상 추천 제한 대상

※ 해당 제한 사유의 발생 기준일 : 추천일

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
2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·처분 관련
 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 - 1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·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3년이내에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(1회 벌금액 기준)의 벌금형을 받은 자
3. 「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」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4.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
 - **산업안전보건법** 위반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이내 1회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**공정거래관련법**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과 그 임원
 - **근로기준법** 및 **노동관계법**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,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**세법** 위반 등과 관련하여 국세,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5.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또는 단체